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01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김민기·조승래·이원욱

정춘숙 • 이재정 • 서동용

이상민 · 강선우 · 이탄희

김병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및 주택, 아파텔 등의 인허가 사항을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계획 허가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업계획 허가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에 따라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 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 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u>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u>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